

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5 ~ 91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5. 10. 26.
제 출 자	거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가. 인터넷 쇼핑몰 ‘거창몰’ 용어 정의와 위탁운영 근거 마련
- 나. 거창푸드종합센터 직매장 설치·운영 근거 마련
- 다. 운전자금 지원 근거와 관리현황 보고 기준 마련
- 라. 거창푸드종합센터 보조사업별 지원 근거 마련

2. 주요내용

- 가. 거창푸드종합센터 기능 중 거창몰 운영 항목 추가와 직매장 설치·운영 근거 마련(안 제28조)
 - 거창몰 : 인터넷을 통한 군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
 - 거창푸드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거창푸드종합센터 직매장을 주요 지역에 설치·운영
- 나. 운전자금 지원 근거와 관리현황 보고 기준 마련(안 제29조)
 -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상 필요한 농산물 확보 등의 비용을 운전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보유금액과 사용내역 등이 포함된 운전자금 관리현황 보고서를 매년 1회 이상 군수에게 제출
- 다. 거창푸드종합센터 활성화 사업 지원 근거 마련(안 제29조의2)
 -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
 - 농산물품질관리사 운용 지원 사업
 - 거창푸드 택배비 지원 사업
 - 거창푸드 마케팅 지원 사업
 - 지역관광연계 활성화 지원 사업
- 라.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삭제함(안 제30조제3항)
 - 위탁취소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군수가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규정 삭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20조, 제43조
-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1조
- 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9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- 「민법」 제750조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

나. 예산조치 : 80,000천원(2016년 본예산 반영)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예산, 법무통계담당)

라. 기타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(3) 입법예고
 - 예고기간 : 2015. 9. 24. ~ 2015. 10. 14.
 -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(4) 비용추계서 : 붙임
- (5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5조제1항”을 “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6호가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”을 “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“농업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.

제5조 각 호외의 본문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8조제1항제3호와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거창몰 : 인터넷을 통한 군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

③ 거창푸드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거창푸드종합센터 직매장을 주요지역에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

제2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상 필요한 농산물 확보 등의 비용을 운전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보유금액과 사용내역 등이 포함된 운전자금 관리현황 보고서를 매년 1회 이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의2(지원사업)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농산물품질관리사 운용 지원 사업
2. 거창푸드 택배비 지원 사업
3. 거창푸드 마케팅 지원 사업
4. 지역관광연계 활성화 지원 사업

제30조제3항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“농산물”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5조제1항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5. “농업”이란 농작물 재배업, 축산업,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6. “농촌”이란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읍·면의 지역을 말한다.</p> <p>7. ~ 11. (생략)</p> <p>제5조(거창푸드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등) 거창푸드산업 육성·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푸드산업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30%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제28조(거창푸드종합센터 설치·운영)</p> <p>① 거창푸드의 생산·가공·유통·소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창푸드종합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1. 전사판매장: 거창푸드의 전사판매 및 마케팅</p> <p>2. 집하·선별·저장: 거창푸드 농산물의 순회수집·집하·선별·소분 및 저장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 <p>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<p>제2조(정의)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----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6호 기목-----</p> <p>5. “농업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.</p> <p>6.----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-----</p> <p>7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거창푸드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등) ----- ----- ----- 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8조(거창푸드종합센터 설치·운영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----- 2. -----</p> <p>3. 거창물: 인터넷을 통한 군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거창푸드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거창푸드종합센터 직매장을 주요지역에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29조(위탁운영) ① ~ ⑥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9조(위탁운영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<u>⑦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상 필요한 농산물 확보 등의 비용을 운전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보유금액과 사용내역 등이 포함된 운전자금 관리현황 보고서를 매년 1회 이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29조의2(지원사업)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농산물품질관리사 운용 지원 사업</u> <u>2. 거창푸드 택배비 지원 사업</u> <u>3. 거창푸드 마케팅 지원 사업</u> <u>4. 지역관광연계 활성화 지원 사업</u>
<p>제30조(위탁의 취소) ① ~ ② (생략) <u>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</u></p>	<p>제30조(위탁의 취소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</p>

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비용발생 요인 : 거창푸드종합센터 보조사업별 지원 근거 마련

나. 관련 조문

- 제29조의2제1호 : 농산물품질관리사 운용 지원 사업
- 제29조의2제2호 : 거창푸드 택배비 지원 사업
- 제29조의2제3호 : 거창푸드 마케팅 지원 사업
- 제29조의2제4호 : 지역관광연계 활성화 지원 사업

2. 비용추계의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거창푸드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발전
- 거창푸드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보장과 지역경제 발전

나. 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16년)	2차년도 (2017년)	3차년도 (2018년)	4차년도 (2019년)	5차년도 (2020년)	합 계
총 비용(a - b)	80,000	80,000	80,000	80,000	80,000	400,000
세출	도비	-	-	-	-	-
	군비	80,000	80,000	80,000	80,000	80,000
	소계(a)	80,000	80,000	80,000	80,000	80,000
세입	0					
	지방세	-	-	-	-	-
	소계(b)	-	-	-	-	-

3. 관련 의견 : 거창푸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

작성자 :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영